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 및 지자체의 비만 예방 및 치료 사업 추가 등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45호)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82호)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28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5
1. 국가 및 지자체의 비만 예방 및 치료 사업 추가(전용기의원안)	5
2. 전자담배 인터넷 판매·광고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송재봉의원안) ..	13
3.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추가 및 과태료 상향 (송재봉의원안) ·	20

I. 개요

1.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34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25.
- (3) 회 부 일 : 2025.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 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

2.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98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3.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32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을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II. 검토의견

1. 국가 및 지자체의 비만 예방 및 치료 사업 추가(전용기의원안, 제8조의5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第8條(禁煙 및 節酒運動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u>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u>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신설>	第8條(금연, 절주, 비만 치료 등) ① ----- <u>직접흡연과 간접흡연, 과다한 음주와 비만이</u> ----- -----. ② ----- 금연, 절주, 비만-----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5 (비만 예방 및 치료)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u>

고,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는바, 세계보건기구 국제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¹⁾) 30kg/m² 이상을 비만으로 보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WPRO)에서는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을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으로 규정함.
-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량 등으로 비만을 판정하나,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기준에서는 BMI 30 이상,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에서는 BMI 25²⁾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함.

< 성인 비만 진단 기준 >

구분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전단계)	비만		
					1단계	2단계	3단계
국 내	국민건강통계	18.5 미만	18.5~23.0 미만	23.0~25.0 미만	25.0 이상		
	대한비만학회	18.5 미만	18.5~22.9	23.0~24.9	25.0~29.9	30.0~34.9	(고도비만) 35.0 이상
	건강검진 기준	(정상B(경계)) 18.5 미만	(정상A) 18.5~25.0 미만	(정상B(경계)) 25.0~29.9	(질환의심) 30.0 이상		
WHO		18.5 미만	18.5~25.0 미만	25.0~30.0 미만	30.0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 BMI 25 기준으로,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007년 31.7%에서 2020년 38.3%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 기준 38.1%에 달하고 있음. 성별로 살펴 보면 남성의 비만율이 47.7%,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³⁾. 아울러, 질병

1)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2) 대한비만학회에서도 2000년 WHO 서태평양사무소가 싱가포르, 홍콩 등의 연구데이터를 바탕으로 권고한 아시아인 기준을 준용하자는 의견임.

관리청이 연령별 체질량지수가 95 백분위 수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분류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 전체 학생의 5.6%였던 비만 유병률이 2021년에는 13.5%까지 상승하였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1년 6.8%에서 2021년 17.5%까지 상승하였음⁴⁾.

- 이러한 비만은 지방조직의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도 우려됨.

< 비만의 계통별 동반 질환 >

계통	성인 비만	
	대사이상에 의한 질환	과도한 체중에 의한 질환
심뇌혈관계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뇌경색(허혈성)	폐색전증, 하지정맥류, 정맥혈전색전증
위장관계	담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위식도역류, 탈장
호흡	-	천식, 수면무호흡증
대사내분비계	제2형 당뇨병, 인슐린저항성,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혈액종양	백혈병, 다발성골수암, 림프종	
근골격계		허리통증, 골관절염, 척수질환
기타	피부감염, 치주질환, 비뇨생식기계, 신경계	마취위험증가, 림프부종, 비뇨생식기계, 정신심리, 신경계

* 출처: 대한비만학회(2012), 비만진료지침 중 일부

- 특히,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이 제주의 경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35~37%를 보이고 있고, 대전, 세종 및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29~31% 수준을 보여 격차가 약 8% 수준에 이르는바,

3) <https://www.index.go.kr>(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표누리 중 ‘국민 삶의 질’ 지표)

4)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비만에 대한 관심 당부」, 2023. 3. 3.

이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가능성⁵⁾이 있음.

< 비만율에 대한 지역별 격차 >

2015-2024년 17개 시·도 결과 및 격차 추이 (단위 : %p, %)

지표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만율(자가보고)	격차	6.2	6.4	6.2	6.6	-	8.0	8.4	8.8	7.7	7.8
	서울	24.5	25.5	25.5	28.6	-	28.5	29.2	30.2	28.8	31.0
	부산	25.5	26.5	25.8	28.6	-	30.1	29.8	31.2	32.1	33.2
	대구	25.6	24.8	26.5	28.2	-	29.6	29.4	28.8	32.0	32.8
	인천	26.8	28.4	29.8	31.9	-	33.5	34.5	32.6	34.5	34.4
	광주	23.5	26.2	27.3	29.5	-	29.7	31.6	31.0	29.2	32.2
	대전	25.7	24.6	25.6	30.0	-	27.0	29.4	28.5	28.4	29.5
	울산	25.1	26.0	26.7	28.5	-	30.4	31.0	33.4	33.2	34.7
	세종	26.2	30.1	27.7	27.8	-	28.0	27.5	27.7	29.3	29.1
	경기	26.0	27.5	28.2	30.7	-	31.6	31.6	31.9	33.0	33.3
	강원	29.7	30.9	31.8	34.3	-	32.6	34.3	35.0	35.0	35.9
	충북	26.5	28.7	29.0	32.1	-	32.4	31.0	32.9	34.5	34.7
	충남	26.4	28.3	28.9	32.1	-	31.6	32.5	32.9	34.4	35.6
	전북	25.7	28.1	27.9	32.2	-	29.2	32.1	33.4	34.1	32.2
	전남	25.4	28.3	28.9	32.6	-	31.4	32.3	33.8	34.0	36.8
	경북	26.5	26.5	29.9	31.4	-	30.8	32.0	32.7	33.9	33.2
	경남	25.8	28.0	27.7	31.2	-	30.7	31.7	33.2	32.4	33.5
	제주	28.5	28.2	29.5	32.6	-	35.0	36.0	36.5	36.1	36.8

* 출처: 질병관리청,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나 비만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국가 및 지자체가 비만의 위험성을 교육·홍보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비만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 하겠음.

5) 박정환(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측면」, 박희승 의원실·대한비만학회 『(가칭)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4. 9. 9.

□ 첫째, 안 제8조에서는 조 제목을 현행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금연, 절주, 비만 치료 등’으로 수정하면서, 교육·홍보 대상 등으로 비만을 추가하고 있음.

□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만큼 조 제목 중 ‘비만 치료’의 경우 ‘비만 예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 6 (생략)

□ 둘째, 안 제8조의5에서도 조 제목을 ‘비만 예방 및 치료’로 하고, 비만에 대한 정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안 제8조의5제2항),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비만인구 감소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 추진,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비 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

- 먼저, 비만의 정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만의 기준은 앞서 본 BMI 외에도 체지방량, 허리 둘레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준 정립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일된 비만 기준의 마련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음.
- 다음, 비만 예방 외에 ‘치료’까지 규정하는 것은 상기한 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비만 예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그 외 법 체계적으로 비만 예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관련된 안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 외,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만·예방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679호),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83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방식과 별도의 제정법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비만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적합할지 논의도 필요하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비만은 신체활동·영양·생활습관 등의 결과로서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건강증진 관점에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비만예방 및 관리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나, ‘치료’에 관한 부분은 건강정보 및 건강실천을 독려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비만의 기준 법제화에 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의무 규정은 재정여건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시책 강구 의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의 법률로 치료적 개념은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만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00

2. 전자담배 인터넷 판매·광고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송재봉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담배 인터넷 판매·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6(전자담배 인터넷 판매·광고의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상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담배 광고 제한⁶⁾에서 배제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생략

-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노출 빈도 증가 등으로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7년 35.2억 갑에서 2023년 36.1억 갑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궤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은 기간 0.8억 갑에서 6.1억갑으로 급증하여 판매 비중이 2017년 2.3%

6)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에서 2023년 16.9%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수입 또한 2021년 378톤(천연 280톤, 합성 98톤)에서 2023년 771톤(천연 555톤, 합성 216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전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담배 판매량 및 제품별 판매 비중>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판매량(억 갑)	35.2	34.7	34.5	35.9	35.9	36.3	36.1
궐련담배	34.4	31.4	30.6	32.1	31.5	30.9	30.0
궐련형 전자담배	0.8	3.3	3.8	3.8	4.4	5.4	6.1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	2.3	9.5	11.0	10.6	12.3	14.9	16.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담배시장 동향보고 보도자료, 2024.1.31.

<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

(단위: 톤, 천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천연	잎 추출	55	5,638	2	160	280	23,263	554	38,969	555	44,456
	다른 부분	417	28,823	218	11,043						
합성										98	6,444

* 자료: 관세청

** 중량 = 용액+용기 무게

□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를 통한 유통이 확산되는 실정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온라인(포털, 오픈마켓, 블로그, 카페 등) 상 담배판매·광고 규제위반 의심사례 등을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의심사례는 2020년 320건에서 2024년 2,013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0~2024년간 온라인 모니터링 조치현황>

(단위 : 개(페이지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심사례	320	458	610	1,797	2,013
조사 건수	15,417	16,142	16,575	16,950	18,019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에 의거한 제품 모니터링 추진 ('23~)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상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전자담배 유통 및 광고 실태에 대한 적시적·체계적 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금연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제12조제4항)을 보면, 소매인은 우편 판매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도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상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는 필요해 보임.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생략)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울러, 현재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잎’을 ‘연초 및 니코틴’으로 변경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최종 입법화 되는 경우 전자담배도 소매인의 전자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담배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연 번	대표 발의자	의안번호	주요 내용
1	박성훈 (국민의힘)	22017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202471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
3	김선민 (조국혁신당)	220256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220287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 규정
5	한지아 (국민의힘)	2202898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규정
6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220464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7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2205037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로 확대·규정, 전자담배(연초 니코틴) 정의 신설
8	송언석 (국민의힘)	2205041	- 담배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규정
9	최은석 (국민의힘)	22051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규정
10	조은희 (국민의힘)	220552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외
11	김민전 (국민의힘)	2211315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규정
12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2211785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13	이인선 (국민의힘)	2211986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규정
14	서명옥 (국민의힘)	221209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煙草),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15	박성훈 (국민의힘)	221230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가)연초, 나)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 다)유사니코틴(그 밖에 나뭇잎 또는 다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규정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등 통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노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담배의 전자거래 및 광고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 시 담배의 전자거래 및 광고에 대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고, 담배에 대한 판매와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은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을 관할하는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것이 법체계 및 행정·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 추가 및 과태료 상향(송재봉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대중교통시설의 일정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신 설>

<신 설>

<신 설>

⑦ ~ ⑨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및 장애인 보호구역

5.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7.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u> 2. <u>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u> <u>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u>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생략)	⑤ -----<u>제4항</u>-----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금연구역은 법률에 의해 직접 지정되는 구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상 금연구역에는 학교 등 교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등이 포함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추가로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통행량, 주민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련 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13. (생략)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20. (생략)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26. (생략)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4년 11월 기준, 전국의 금연구역은 총 1,873,987개소로, 이 중 법률상 금연구역은 1,687,116개소(90%), 조례상 금연구역은 186,871개소(10%)가 지정되어 있음.

<금연구역 현황 (2024.11.19.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개수	1,873,987 (100.0%)	1,687,116 (90.0%)	186,871 (10.0%)

□ 세부적으로 보면, 법정 금연구역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8,727개소, 어린이집 19,888개소, 교통관련 시설 11,059개소, 사회복지시설 58,844개소 등 총 168만 7,116개소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종류별 현황 (2024.11.19.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현황	
	시설현황	현황별 비율
계	1,687,116	100.0
청사(제1~5호)	16,811	1.0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제6호)	28,727	1.7
어린이집(제9호)	19,888	1.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제6항)	48,655	2.9
대학교(제7호)	564	0.0
의료기관(제8호)	77,027	4.6
청소년활동시설(제10호)	1,229	0.1
도서관(제11호)	5,792	0.3
어린이놀이시설(제12호)	65,807	3.9
학원(제13호)	89,285	5.3
교통관련시설(제14호)	11,059	0.7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제15호)	41,613	2.5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제16호)	191,451	11.3
공연장(제17호)	606	0.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제18호)	1,640	0.1
관광숙박업소(제19호)	3,249	0.2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업(제20호)	63,959	3.8
사회복지시설(제21호)	58,844	3.5
목욕장(제22호)	5,914	0.3
게임제공업소(제23호)	24,534	1.5
음식점(제24호)	925,979	54.9
만화대여업소(제25호)	781	0.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제26호)	307	0.0
공동주택(제5항)	3,395	0.2

* 자료출처: 2024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결과 보고(2025.2.3.)

- 아울러,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117,135개소, 62.7%), 횡단보도(20,394개소, 10.9%), 교육환경보호구역(14,153개소, 7.6%), 도시공원(14,040개소, 7.5%) 등이 주를 이루며, 이 외에도 택시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종류별 지정 현황 (2024.11.19. 기준) >

(단위 : 개소, %)

시설	시설현황	
	시설현황	현황별 비율
계	186,871	100.0
도시공원	14,040	7.5
교육환경보호구역	14,153	7.6
버스정류소	117,135	62.7
택시정류소	2,960	1.6
해수욕장	156	0.1
거리	763	0.4
광장	142	0.1
지하철역 주변(출입구)	4,233	2.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7,122	3.8
횡단보도	20,394	10.9
기타**	5,773	3.1

- 한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전국에 어린

이보호구역 16,308개소, 노인보호구역 3,445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18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도로교통법」 상 보호구역 관련 규정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인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⑤ (생략)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③ (생략)

< 「도로교통법」 상 보호구역 지정 현황 >

구분	근거 법률	주요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	지정건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및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 (조례로 정하는 곳 포함)	16,308
노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 (조례로 정하는 곳 포함)	3,445
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1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간접흡연 방지효과를 강화할 수 있고, 기존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던 실외 금연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등 일반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법 제9조 제7항7)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운데, 개정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과 중복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대중교통 시설의 일정구역의 경우에도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및 지하철역 주변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고 있는 바, 보다 실효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현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선행될 필요도 있겠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또한,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과태료가 상당히 낮아 흡연을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이기도 함.

<최근 5년간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정 금연구역 내 과태료 건수	10,509건	10,044건	7,564건	10,408건	7,991건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매년 12. 31. 기준)

□ 다만, 「경범죄 처벌법」은 광고물 무단부착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자연훼손 5만원, 쓰레기 투기 3만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법안 심사 시 참고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이 조례를 통해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다수 공중이 오가는 실외 장소에 대해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 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취지는, 지자체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의 위치, 형태, 유동인구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판단토록 한 것으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 외, (사)한국담배협회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지정목적과는 다른 과잉입법에 해당하며, 실외 금연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과도한 금연구역의 확대는 주민의 사적영역 침해 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흡연공간 부족으로 인한 음성적 흡연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96

참고1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현황

시설	2022년*		2023년		2024년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 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 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 원)
계	7,564	718,457	10,408	1,007,626	7,991	779,290
청사 (제1~5호)	764	74,360	1,067	106,000	974	95,930
어린이집 (제9호)	31	3,050	4	400	50	5,000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제6호)	169	14,890	146	12,070	220	21,600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제6항)**	73	6,320	422	42,150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2024.8.17. 시행) (제6항)					1,031	102,150
대학교 (제7호)	80	8,000	138	13,800	273	23,650
의료기관, 보건소 등 (제8호)	650	63,960	625	61,650	457	45,050
청소년활동시설 (제10호)	2	200	4	400	3	300
도서관 (제11호)	25	2,350	25	2,450	31	3,050
어린이놀이시설 (제12호)	10	1,000	13	1,180	2	200
학원 (제13호)	0	0	0	0	0	0
교통관련시설 (제14호)	83	7,890	381	38,060	227	22,30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제15호)	1	100	3	300	1	100
사무용건축물,	4,078	385,870	5,565	530,502	3,970	384,960

시설	2022년*		2023년		2024년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 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 원)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천 원)
공장 및 복합건축물 (제16호)						
공연장 (제17호)	0	0	2	200	0	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제18호)	78	7,700	228	22,800	81	8,100
관광숙박업소 (제19호)	0	0	0	0	0	0
체육시설 (제20호)	13	1,300	17	1,700	11	1,100
실내 체육시설 (제20호)	5	500	8	780	7	700
사회복지시설 (제21호)	1	100	2	200	0	0
목욕장 (제22호)	0	0	0	0	0	0
게임제공업소 (제23호)	1,296	121,757	1,598	157,764	508	50,700
음식점 (제24호)	194	18,620	153	14,820	143	14,300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제24호)	0	0	1	100	0	0
만화대여업소 (제25호)	0	0	0	0	0	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제26호)	0	0	0	0	0	0
공동주택 (제5항)	11	490	6	300	2	100

* 2022년의 경우, 시스템 실적 입력 화면 기능 개편으로 지자체 오입력 사항을 수정함

** 제9조제6항의 경우 2024년 8월 이후 10m → 30m로 확대되면서, 8월 이전에 부과했던 10m의 실적은 30m 실적으로 포함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매년 12.31.기준)('25년 실적의 경우 익년도 1분기 중 취합 예정)